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9. 5.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타 단체에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험가입 등 동일한 요구를 할 경우에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험가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를 “안 제4조” 로 하며, “안 제6조” 를 “안 제5조” 로 한다.

3. 참고사항

-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안 제4조”로 하며, “안 제6조”를 “안 제5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제4조(보험가입)</u>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u>제5조(준용)</u> (생략) <u>제6조(시행규칙)</u> (생략)	<삭 제> <u>제4조(준용)</u> (원안과 같음) <u>제5조(시행규칙)</u> (원안과 같음)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구미시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 구미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 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 구미시새마을여성합창단, 새마을교통봉사대구미시지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 서명명부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illegible]